

••• 2021/6/14

전직원 회람 공지 MEMO+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:經營 戰略

2021년도에 적용되는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방법

1. 대상 : 신성장,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(2021년 12월 말까지 발생분)

2. 공제율: 중소기업은 30%, 기타는 20%,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은 25%

3. 연구소: 연구개발업무만 수행하는 국내소재 전담부서 + 기업부설연구소

4. 연구원: 연구전담직원만 해당(연구소 관리 직원이나 겸직연구원은 해당안됨)

- 5. 연구원 인건비: 연구전담부서의 연구개발 전담요원의 급여, 상여, 수당 등 인건비 (퇴직소득 제외, 퇴직연금부담금 제외, 퇴직급여충당금의 비용반영액 제외)
- 6. 연구직접비용: 연구용 견본품, 부품, 원재료, 시약류, 시범제작 외주가공비, 관련 S/W 서체, 음원, 이미지 대여구입비 등(교통비, 복리비, 소모품비는 제외)
- 7. 연구시설비용: 연구전담부서 직접사용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비용(시설임차운영리스비용, 렌탈비용 포함), 외주기관 시설의 이용비용 등도 해당(단, 금융리스 이자는 해당안됨. 차입금이자도 해당 안됨)
- 8. 금융비용제외: 연구부서를 위한 금융차입금의 지급이자 제외, 금융리스 이자제외, 렌탈료 등의 이자해 당액도 제외
- 9. 출연, 지원 제외: 연구개발출연금 등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, 공공기관·지방공기업이 지원한 연구개발비 해당액도 제외함.